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5. 26 선고 2018가단860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복단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돈영

변 론 종 결 2021. 4. 28.

판 결 선 고 2021. 5. 26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1. 4. 1.부터 2021. 4. 27.까지 연 5%,
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7. 11. 10. 체결된
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
2017. 11. 13. 접수 제9099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. 1. 17. 5,000만 원, 2017. 2. 2. 3,000만 원을 대여하였고, 피고 B으로부터 그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. 그 후에도 원고는 2017. 2. 13.부터 2017. 12. 6.까지 피고 B에게 대여금, 투자금, 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,03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.

나. 피고 B은 2017. 2.경부터 2018. 6.경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등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변제를 약속하였다.

다. 피고 B은 여러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. 11. 13. 형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(이하 ‘이 사건 지분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7. 11. 10. 매매예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예약’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가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라.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고(그 과정에서 2020. 1. 13. 추가 변제도 이루어졌다), 최종적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2021. 3. 31.까지 9,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 합의를 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~14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3, 4, 1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, 피고 B은 원고에게 정산합의금 9,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21. 4. 1.부터 2021. 4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1. 4. 27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이 정한 연

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또한 피고 B은 원고 등에 대하여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2007. 2. 23.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),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피고들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 피고 C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박광민

[별 지 목 록]

(부동산의 표시)

1.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중랑구 제4층 호

철근 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8층 공동주택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:

구 조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: 30.9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665.4분의 12.346

2.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중랑구 제4층 호

철근 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8층 공동주택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:

구 조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: 30.9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665.4분의 12.346

3.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중랑구 제5층 호

철근 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8층 공동주택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:

구 조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: 30.9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665.4분의 12.346

4.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중랑구 제5층 호

철근 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8층 공동주택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:

구 조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: 30.9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665.4분의 12.346

5.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중랑구 제5층 호

철근 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8층 공동주택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:

구 조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: 30.9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665.4분의 12.346

6.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중랑구 제6층 호

철근 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8층 공동주택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:

구 조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: 30.9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665.4분의 12.346

7.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중랑구 제6층 호

철근 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8층 공동주택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:

구 조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: 30.9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: 665.4분의 12.346

- 이 상 끝 -

